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신설〉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11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남근 · 강준현 · 권향엽 · 김문수 · 김용만 · 김현정
민병덕 · 박용갑 · 박 정 · 박정현 · 박지혜 · 박해철
송재봉 · 이강일 · 이광희 · 이용우 · 이재강 · 이주희
장종태 · 전현희 · 정일영 · 진성준 · 허종식 · 박홍배
의원(24인)

2. 제 안 일 : 2026. 3. 24.

3. 회 부 일 : 2026. 3. 25.

※ 의안번호 : 17711

II.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 · 국회규칙안
의 체계 · 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 · 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
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
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
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
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 ·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
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

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
·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체계·자
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
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 나.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 다.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
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IV. 검토의견

1.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행해왔던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 관련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아목 삭제 및 같은 항 제3호 신설 등).

[표-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개정사항		○ (현 행)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수행 ○ (개정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법무 관련 사항 전담
체계 자구 심사 위원회	소관	○ 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
	성격	○ 겸임 상임위원회 ※ 유사사례: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구성	○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법률상 당연직 위원 ※ 유사사례: 운영위, 정보위 ○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사. (생략) 아. <u>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u> <u>·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u> <u><신설></u> 3. ~ 17. (생략) ② (생략)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생략)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u>국회운영위원회</u>의 위원이 된다. ③ · ④ (생략)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②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 가. ~ 사. (현행과 같음) <u><삭제></u> 3.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u>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자구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u> 4. ~ 18. (현행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회운영위원회 및 체계·자구심사위원회</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u> <u>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u>

현행	개정안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선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u> <u>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u> <u>따라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위원의</u> <u>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u>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u>제5항까지에</u>----- ----- ----- ----- ----- ----- ----- -----.

체계·자구 심사는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적합성이나 통일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¹⁾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체계·자구 심사를 수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권한을 넘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수정하여 해당 위원회와 갈등을 빚거나 상당 기간 법률안의 처리를 지연하여, 법제

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440

사법위원회의 월권 내지 상원화에 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음.²⁾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등을 소관하고 있어, 사법행정 분야에 현안이 발생하여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체계·자구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 접수 건수도 적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음.

[표-3] 제22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접수 현황

(2026. 5. 30. 기준)

상임위	접수 건수	상임위	접수 건수
국회운영위원회	439	행정안전위원회	2,398
법제사법위원회	1,7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34
정무위원회	1,45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5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712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909
교육위원회	885	보건복지위원회	1,6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99
외교통일위원회	205	국토교통위원회	1,580
국방위원회	517	정보위원회	22
		성평등가족위원회	246

개정안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안 또는 규칙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체계·자구 심사 시 사법행정 분야의 정책적·정치적 현안의 영향을 줄이고 법률안 및 규칙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보다 전문적·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전진영,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국회입법조사처, 2026.

또한, 개정안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자구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 또는 논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들 개정안을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표-4] 유사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신동욱의원안 (596)	-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 신설 (기존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위원회로 변경)
박홍근의원안 (990)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 -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전담기구가 법률안의 입안, 체계·형식과 자구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소위원회) 의결로 법제전담기구에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요구 → (법제전담기구) 요구일부터 15일(최장 30일) 이내 검토결과 제출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개선방안으로 ①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② 국회사무처 내 법제전문기구에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

는 방안 외에 ③ 각 상임위원회에 체계·자구 검토를 전담하는 전문
위원 1인을 증원하는 방안, ④ 체계·자구 검토를 전담할 새로운 기
관·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음.

2. 체계·자구 심사 절차

개정안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30일(최장 90일)로 명시하고,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기한 내에 체계·자구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체계·자구 심사결과의 반영 여부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u>법제사법위원회</u> 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u>법제사법위원회</u>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 ----- -----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 ----- ----- <u>체계·자구심사위원회 위원장</u> ----- ----- -----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u>법제사법위원회</u> 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	② ----- ----- ----- -----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 ----- -----.

현행	개정안
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	----- ----- ----- ----- -----. ③ 체계·자구심사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결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명투표로 표결한다.</u> <u>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자구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

현행법³⁾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 3)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14.>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록 규정함.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결과를 반영할지를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30일(한 차례 연장 시 최장 90일)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넘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한 입법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우선, 개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경우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월권 논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입법권 간 균형을 이루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운영 시 입법 지연을 방지하고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3항 단서).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u>법제사법위원회</u>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u>90일</u>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u>법제사법위원회</u>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u>법제사법위원회</u>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u>법제사법위원회</u>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u>법제사법위원회</u>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u>법제사법위원회</u>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③ ----- ----- -----<u>체계·자구 심사위원회</u>----- ----- ----- -----<u>20일</u>-----. ④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 ----- ----- -----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 -----. ⑤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 ----- ----- ----- -----<u>체계·자구심사위원회</u>----- -----

현행	개정안
⑥ ~ ⑧ (생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안전신속처리제도는 제18대 국회 말에 국회법 개정(2012. 5. 25. 개정,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해서는 일정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여·야 간 쟁점 안전이 심의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⁴⁾

현행법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되면, 위원회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경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함.

그런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전담할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원칙적으로 30일(최장 90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체계·자구 심사가 장기화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4)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431

[표-7]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소관위 심사기간	180일	180일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	20일
본회의 상정기간	60일	60일
총 심사기간	330일	260일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20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 제도와 체계·자구 심사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표-8] 유사 개정안의 주요내용

발의의원	주요 내용			
진성준의원안 (255)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75일’로 단축			
	구분	소관 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현행법	180일	90일	60일
	개정안	60일	15일	본회의 부의 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
박홍근의원안 (990)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90일’로 단축			
	구분	소관 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현행법	180일	90일	60일
	개정안	60일	(체계·자구 심사 폐지)	30일
송영길의원안 (19947)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70일’로 단축			
	구분	소관 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현행법	180일	90일	60일
	개정안	30일	20일	20일

문 의 처
02)6788-5015